

〈한국금융학회 2018년 춘계정책심포지움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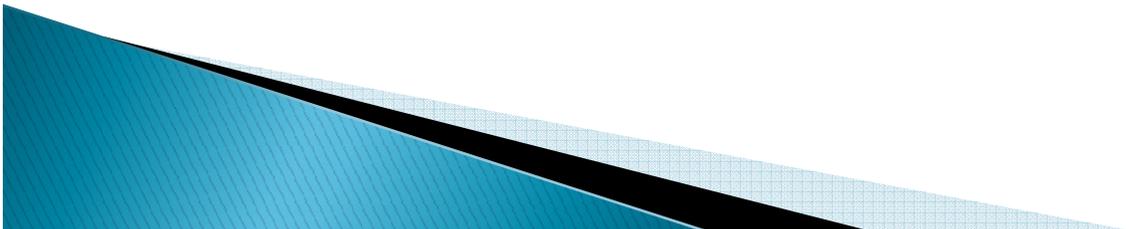
금융기관의 소유 및 지배 구조의 현안과 과제

2018. 4. 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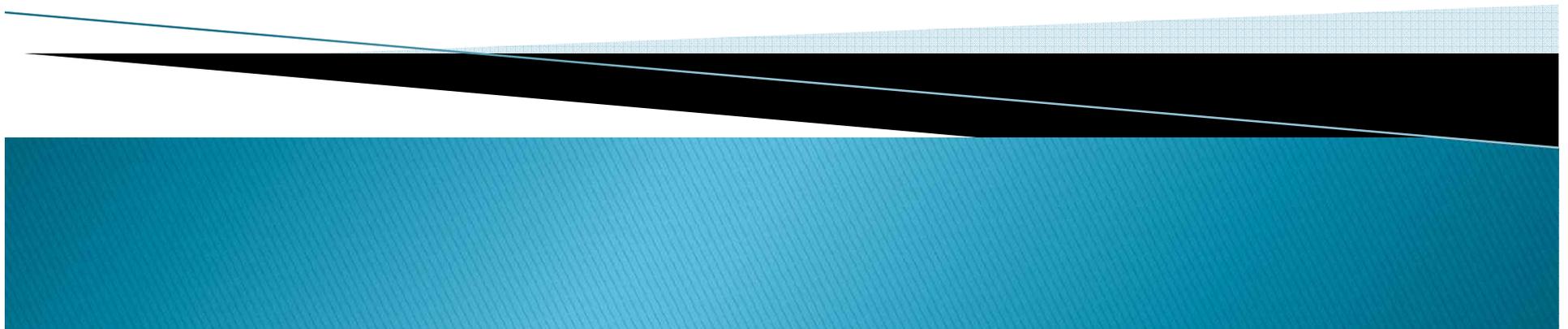
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
고동원 교수

차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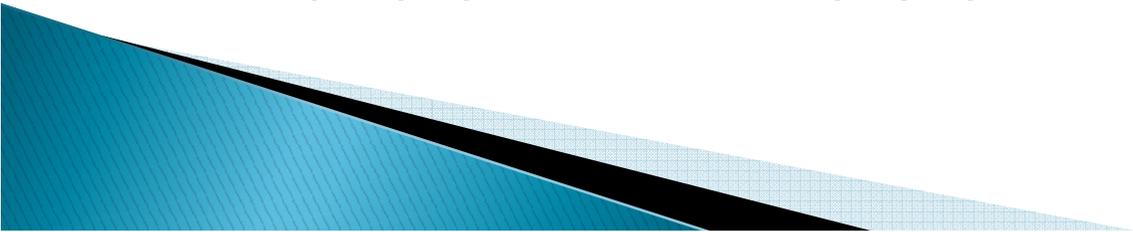
- ▶ I.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 분리
- ▶ II. 금융지주회사 회장(최고경영자)의 연임 문제
- ▶ III. 근로자추천이사제의 도입 문제
- ▶ IV. 금융기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(Stewardship Code)의 도입과 운영
- ▶ V. 기타 지배구조 개선 과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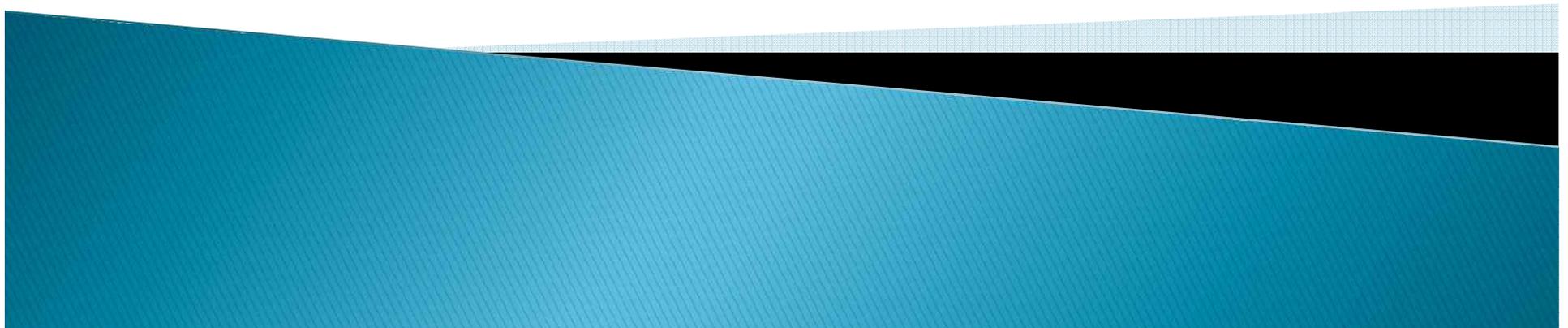
I.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 분리



논의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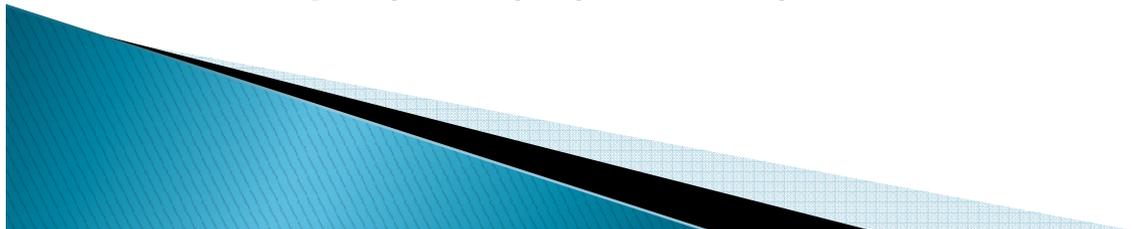
- ▶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면서 銀産 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
 - ▶ 은산 분리: 산업자본(비금융회사)이 은행의 대주주 되는 것을 제한(은행법 제16조의2)
 - ▶ ‘금융기술’(FinTech)의 한 분야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정보통신기술(ICT)이 주도를 해야 한다는 주장
 - ▶ 현재 케이뱅크 및 한국카카오은행이 영업
- 

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은 산분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대한 검토



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

- ▶ 인터넷전문은행은 ‘금융기술’의 대표적 분야이므로 정보통신기술(ICT) 기업이 주도를 해야 한다는 주장
 - 일부 그러한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은산 분리 완화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
 - 오히려 은산 분리 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폐해가 더 클 수 있음
 - 반드시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대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필연적인 것도 아님
 - 금융기관이 주도할 수도 있는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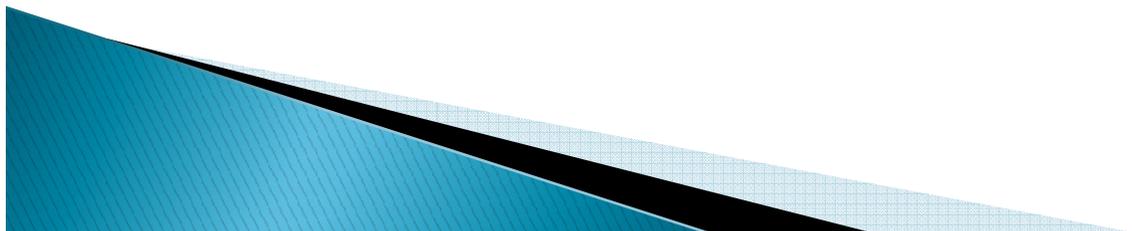


“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 하지 말아야”-금융행정혁신위원회 입장

- ▶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로 2017. 8. 설치되었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“현 시점에서 은산 분리 완화가 한국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,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[하며],” “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 하지 않도록 권고[하고],” “향후 금융산업은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핀테크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나,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연결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”한 바가 있음(금융행정혁신위원회, 금융행정혁신보고서, 2017. 12. 20, 63-64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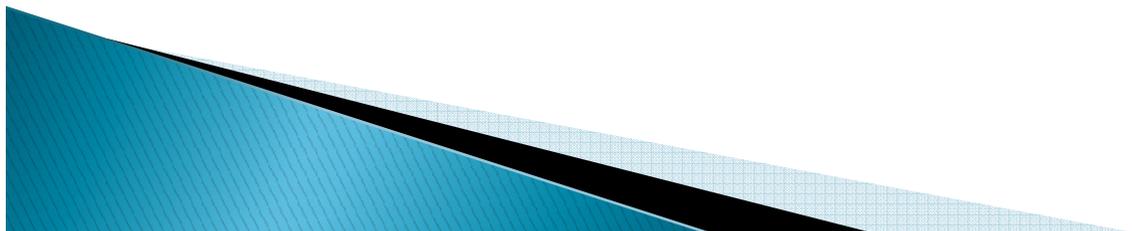
감독 강화로 은산분리 완화 시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

- ▶ 감독의 강화를 통해서 은산 분리 완화 시의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
- ▶ → 원칙론으로는 일리가 있지만, 실제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음
- ▶ → 대표적으로, 2011년 상호저축은행 사태 시 은산 분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아 파산에 이르게 한 다수의 사례 → 분명 여신한도 규제가 있었음에도 감독당국이 이를 사전에 철저히 감독하지 못한 사례
- ▶ → 2013년 동양증권 사태 시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(CP)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여 불완전판매를 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 → 감독의 미비: 증권회사 등 제2금융권에도 은산 분리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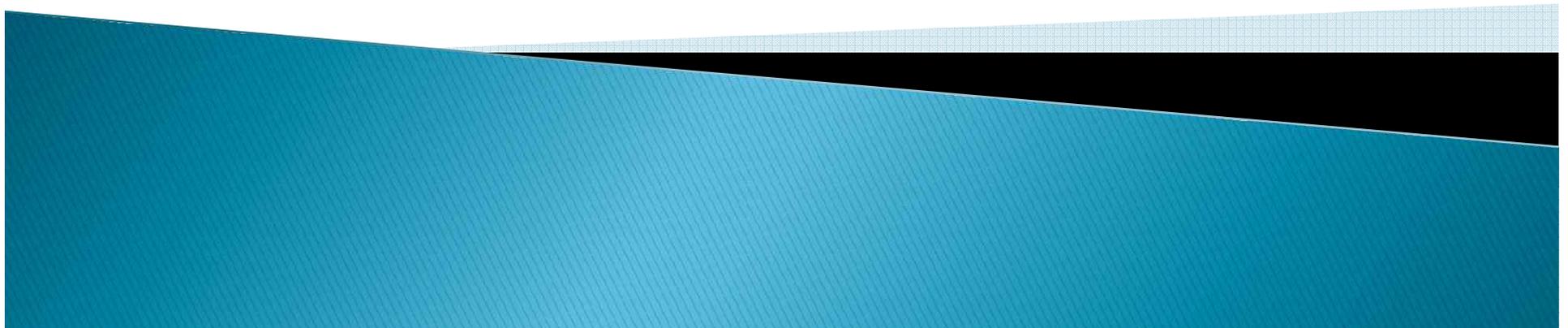


은산 분리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본 확충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

- ▶ 은산분리 완화가 되지 않아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본 확충을 할 수 없어 인터넷은행 성장의 ‘발목을 잡고 있다’는 주장(특히 케이뱅크 사례)
- ▶ → 기존 주주 배정이나 제3자 배정 등을 통해 자본금 확충 가능함: 은행업 인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(자금 조달 계획)에 따라 자본금 확충을 하는 것이 정답
- ▶ → 인가권자가인 금융위원회가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해준 것이 문제
- ▶ → 은산 분리 완화는 입법 사항이라 국회의 권한임에 불구하고 완화를 전제로 인가를 해준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될 여지가 있음
- ▶ → 더욱이 차입이나 사채 발행을 통해서도 자금 조달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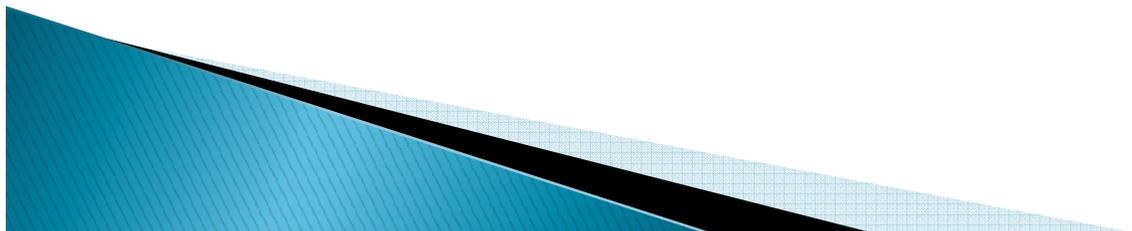


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은산 분리가 필요한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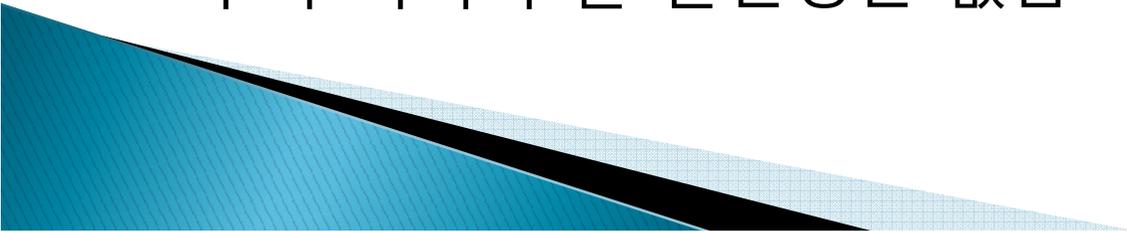


여전히 사금고화 (私金庫化) 문제 발생할 가능성 존재

- ▶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정보통신기술 기업도 여전히 은행의 자금 수요자임
- ▶ 대주주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은행의 자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
- ▶ 금융 감독의 강화를 통해서 이를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
 - 상호저축은행 사태 시 대주주의 사금고화 사례
 - 동양증권 사태 시 동양증권 대주주의 사금고화 사례
- ▶ 특히 비효율적인 감독체계를 갖고 있는 현 체제를 볼 때 더욱 그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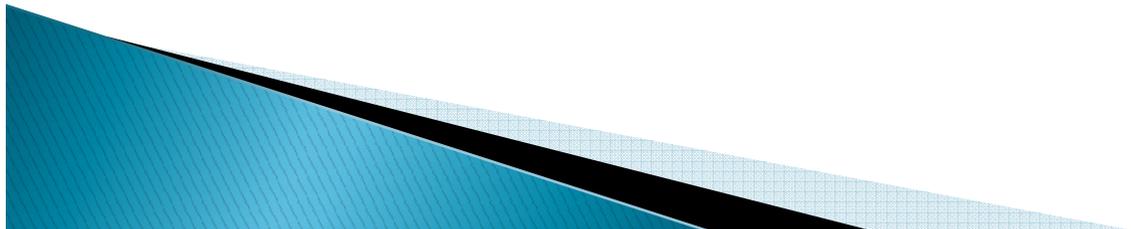


정보통신기술보다 은행의 위험 관리가 더 중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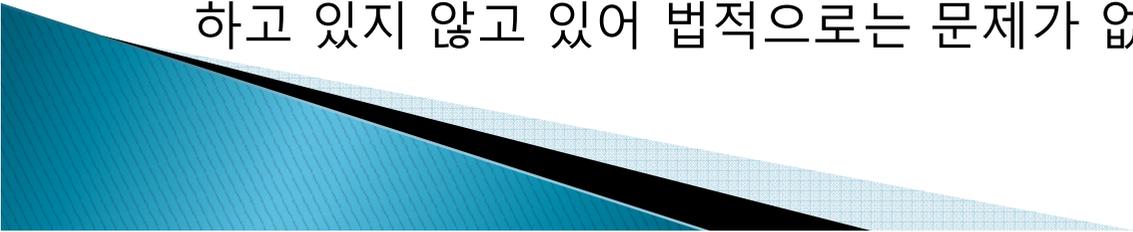
- ▶ 인터넷전문은행도 ‘은행’이므로 정보통신기술보다는 여신 관리 등 위험 관리 체제(risk management)가 더 중요함
 - ▶ 금융기술보다는 정교한 위험 관리 체계 구축과 여신 관리, 효율적인 영업 전략을 통한 수익성 확대가 더 중요함
 - ▶ 따라서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야 할 필연성은 없음
- 

금융기관도 금융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음

- ▶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(은행, 증권회사, 보험회사 등 '금융주력자')도 정보통신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투자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음
- ▶ 신한은행의 '써니뱅크'나 우리은행의 '위비뱅크' 등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모바일 뱅킹이 대표적인 사례 → 금융기관도 충분히 금융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음을 나타냄
- ▶ 정보통신기술 기업에게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지위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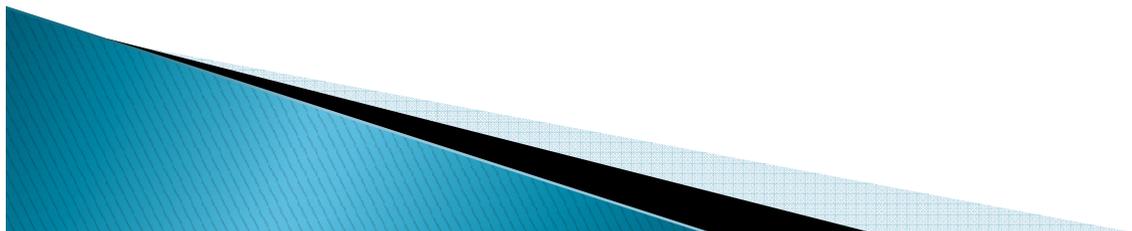


대주주의 영향력 행사에 따른 문제점 발생

- ▶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때 은행의 임원 선임에서 있어서 대주주의 영향력이 크게 미칠 수 있음
 - ▶ 대주주인 정보통신기술 기업은 은행 경영의 경험이 없음
 - ▶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은행의 영업을 망칠 가능성
 - ▶ 대주주 회사인 정보통신기술업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은행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음 → 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과연 은행을 잘 경영할 수 있는지 의문
 - ▶ 은행의 지배구조에 적용되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상 은행장이나 사내이사의 자격 요건으로서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음 → 향후 개선될 필요
-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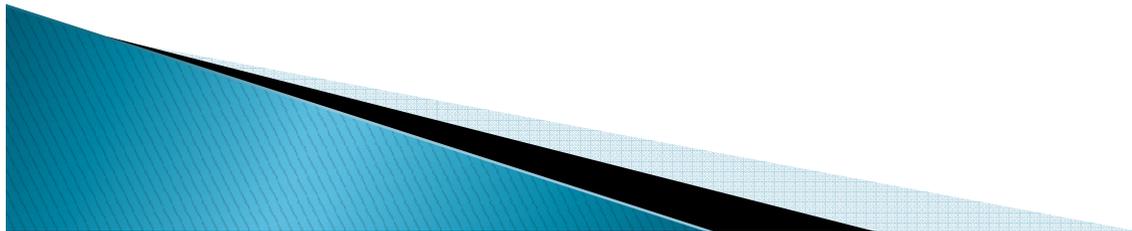
일반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원칙의 훼손 가능성

- ▶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 제한에 예외를 두게 되더라도, 이는 '은산 분리'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 향후 일반은행에 대해서도 '은산 분리'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할 여지가 있음
- ▶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은산 분리 원칙의 예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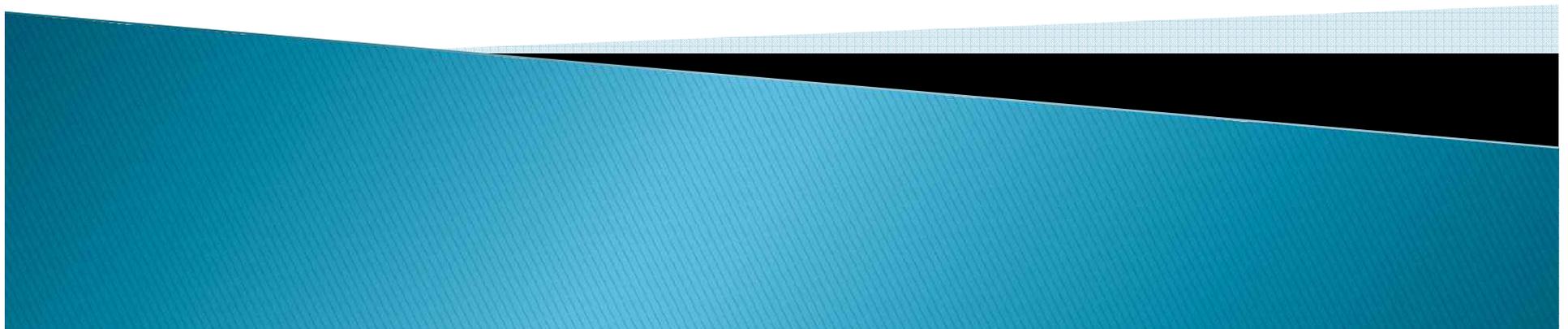


외국 산업자본에게도 허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

- ▶ 은산 분리 완화 시 외국 산업자본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신청할 때 이를 막을 명분도 없음
- ▶ 국내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면 동일하게 외국 산업자본에게도 허용해야 할 것임
- ▶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두고 제기되는 은산 분리 완화 주장이 이 점을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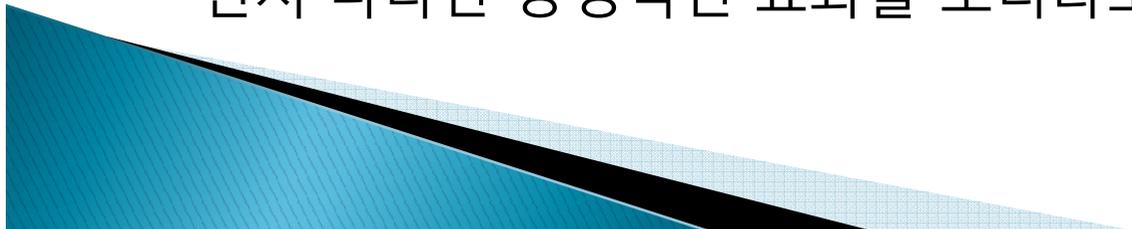


향후 과제



다수의 인터넷전문은행 출현 필요

- ▶ 인가권자인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를 함에 있어서 1개 내지 2개 인가하겠다고 못박을 것이 아니라,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는 인가를 내주겠다는 정책 방향 설정 필요
- ▶ **여러 은행이 출현해야 경쟁 시장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서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산업의 발전 도모 가능** → 금융당국은 은행이 ‘망하는 것’을 두려워해서는 안됨 → 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 → 은행이 파산하면 미리 마련해둔 정리절차에 따른 효율적 정리를 하여 시장에 대한 충격을 막으면 됨
- ▶ 시장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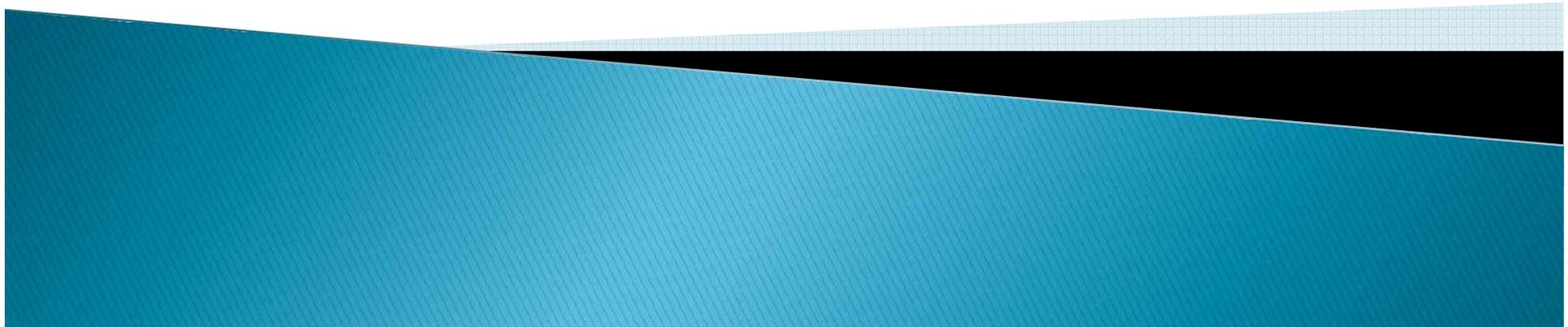


은행 진입 규제 완화 정책의 필요-다 양한 은행의 출현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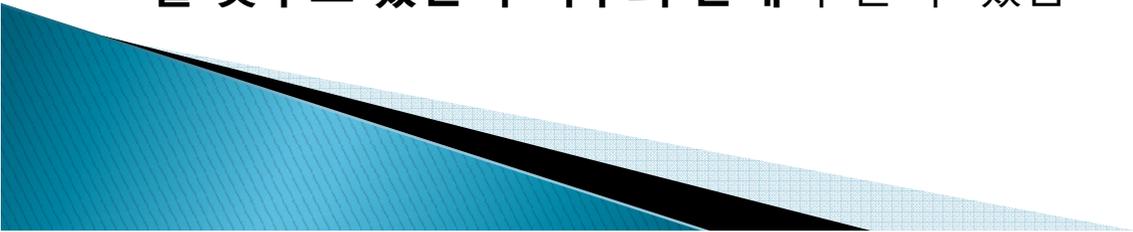
- ▶ 더 나아가서, 인터넷전문은행 이외에도 일반은행의 경우에도 다양한 은행이 나타나서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음
- ▶ 소매금융 전문 일반은행, 사회적 금융(서민금융 포함) 전문 일반은행 등 → 자본금 요건 등 인가 요건이나 감독 기준 등 차별화 필요
- ▶ 그동안 금융당국의 은행 대형화 정책에 따라 과점 상태가 되어 버린 은행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은행 진입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



II. 금융지주회사 회장(최고 경영자)의 연임 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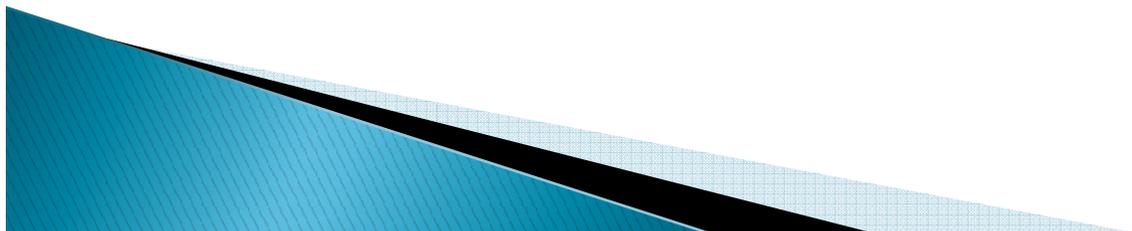


논의 배경

- ▶ 최근 금융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(회장)의 연임 문제가 쟁점이 됨
 - ▶ 임원(회장)후보추천위원회가 현직 회장을 후보로 추천하면서 장기연임의 문제 제기
 - ▶ 능력이 있고 좋은 성과를 낸 회장의 연임을 문제삼을 수는 없는 것임
 - ▶ 다만, 선임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, 그렇지 않은 경우 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
 - ▶ 결국 회장(임원)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면에서 독립성, 공정성, 투명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의 문제라 할 수 있음
-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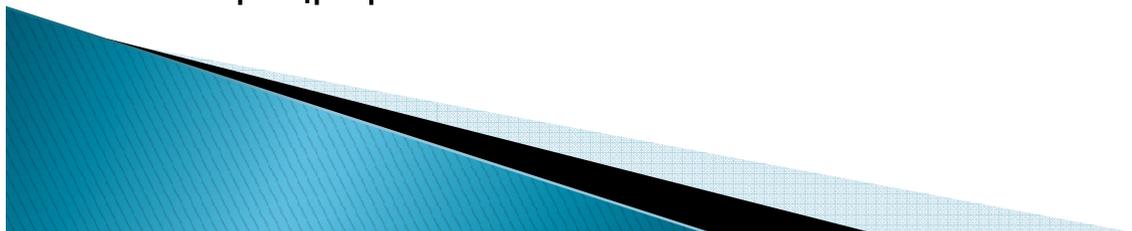
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

- ▶ 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’상 금융기관의 대표이사(회장)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인 ‘임원후보추천위원회’의 추천을 받아 선임됨(제17조)
- ▶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도 추천함(제17조 제1항)
- ▶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, 그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고,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되어야 함(제16조 제3항, 제4항, 제17조 제2항)
- ▶ 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도 위원이 됨
- ▶ 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’은 대표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고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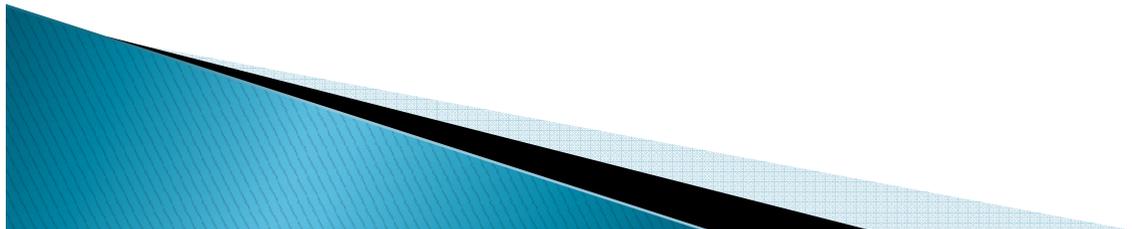
경영진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조

- ▶ 그러다보니, 현직 대표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됨
- ▶ 특히,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외이사도 선임 과정에서 해당 금융기관 경영진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받아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대표이사의 영향력이 미치게 됨
- ▶ 사외이사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되는데(제 17조 제1항), 이 과정에서 경영진의 영향력이 행사될 여지
- ▶ 즉 경영진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현직 회장(대표이사)을 후보로 추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임의 문제가 제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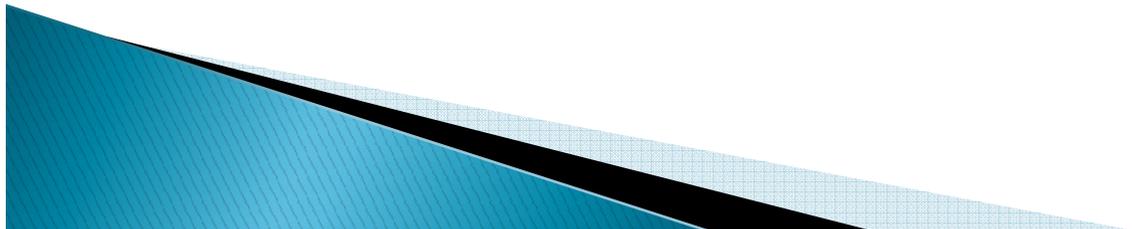
독립성, 공정성, 투명성을 갖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필요

- ▶ 결국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 절차 면에서 독립성, 공정성, 투명성을 갖추 수 있는 제도적 개선 과제가 필요
- ▶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경영진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(즉 독립성 확보 방안)이 필요
- ▶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



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

- ▶ 경영진의 영향력을 받아 선임된 사외이사는 현 경영진에 대하여 ‘신세를 지게 되는’ 것임
- ▶ ‘신세를 진’ 사외이사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없게 됨
- ▶ 이러한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대표이사(회장) 후보 추천 시 현직 회장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음
- ▶ 따라서 현직 경영진의 ‘신세를 지지 않는’ 사외이사를 어떻게 선임할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문제
- ▶ 경영진이 아닌 **‘독립성을 갖춘 후보 관리기관’**이 사외이사 후보군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



독립성을 갖춘 ‘사외이사 후보추천관리 기기관’의 운영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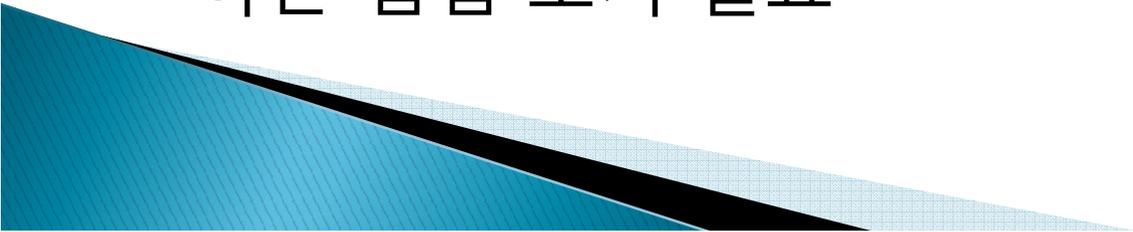
- ▶ 해당 금융기관이 ‘사외이사 후보추천관리기관’에게 후보 추천을 요청하면 ‘후보추천관리기관’은 관리하고 있는 여러 후보군 대상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3배수로 해서 해당 금융기관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을 함
- ▶ ‘후보추천관리기관’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**관련 금융업협회를 고려할 수 있음**
- ▶ →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, 증권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 금융투자협회, 보험회사 및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
- ▶ 후보추천관리기관이 후보 추천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**전문 외부인사로 구성된 내부 ‘후보추천관리위원회’에서 해당 후보를 선정**
- ▶ 위원회의 회의록 및 선임 절차 과정을 공개하여 **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**

▶ → 법제화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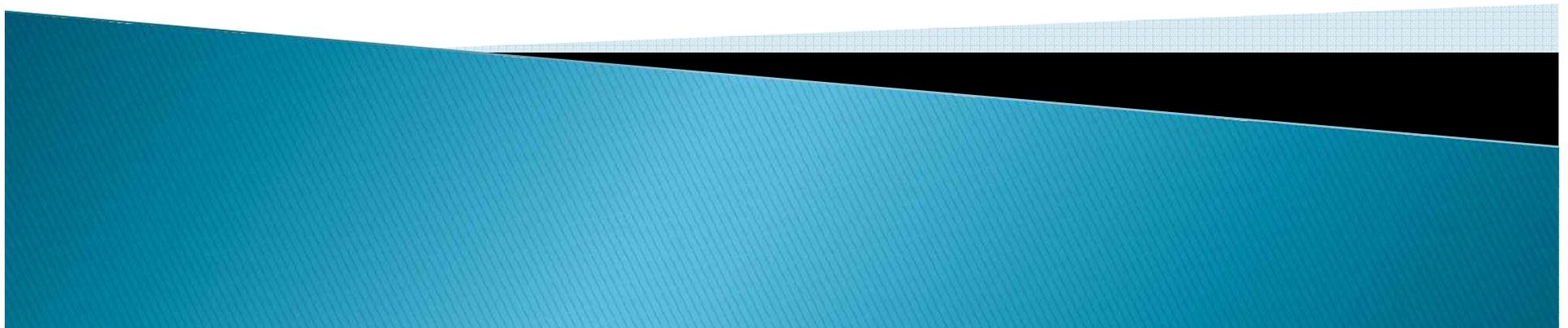
임원 후보 추천 과정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필요

- ▶ 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’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
의회의 후보 추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
투명성이 결여
- ▶ 투명성 확보는 결국 공정성 확보로 연결
- ▶ 따라서, ‘사외이사후보추천관리기관’ 뿐만 아니라 ‘임
원후보추천위원회’의 회의록 및 선임 절차에 관한 구
체적인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 조치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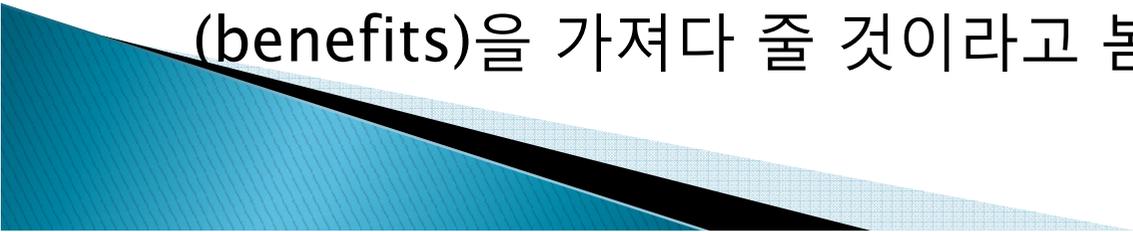
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서 대표이사 배제 필요

- ▶ 사외이사나 대표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현직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
 - ▶ 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’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에 의결권 제한 규정만 두고 있음(제17조 제5항)
 - ▶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하는 입법 조치 필요
- 

III.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논의



“OECD기업지배구조원칙”상의 근로자의 경영 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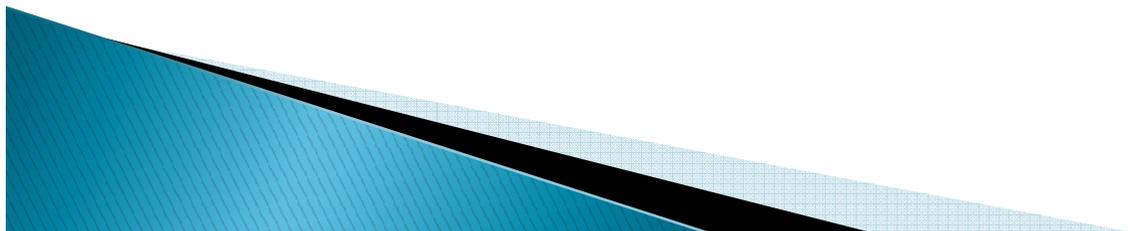
- ▶ G20/OECD “기업지배구조원칙”(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)(2015)은 근로자(employee)의 경영 참여를 권고(“Mechanisms for employee participation should be permitted to develop”)(p.35)
 - ▶ 이러한 근로자의 경영 참여 방법으로서 **근로자의 이사회 참여(employee representation on boards)**와 주요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 반영 방법을 제시(p. 35)
 - ▶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직간접적으로 대상 회사에 혜택(benefits)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봄(p. 35)
- 

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주장의 배경

- ▶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“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”(2017. 7)에 따르면, 2018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해 노동이사제 도입 예정(37면)
- ▶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해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권고(금융행정혁신보고서, 89면)
- ▶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근로자가 직접 사외이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, 근로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사외이사가 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직접 사외이사가 되는 노동이사제 내지 근로자이사제와는 다름
- ▶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재의 실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은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여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 있음

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의 반대 주장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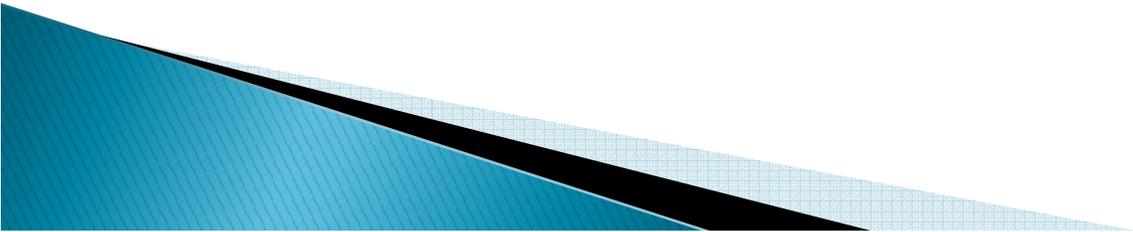
- ▶ 현행 ‘노사협의회’ 운영으로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 굳이 근로자추천이사제 필요 없음
- ▶ 근로자의 과도한 경영 간섭 내지 개입과 주요 경영 사항의 노출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
- ▶ 신속한 의사 결정에 걸림돌
- ▶ 기업의 이익보다는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시 할 가능성
- ▶ 노동조합의 영향에 따른 정치적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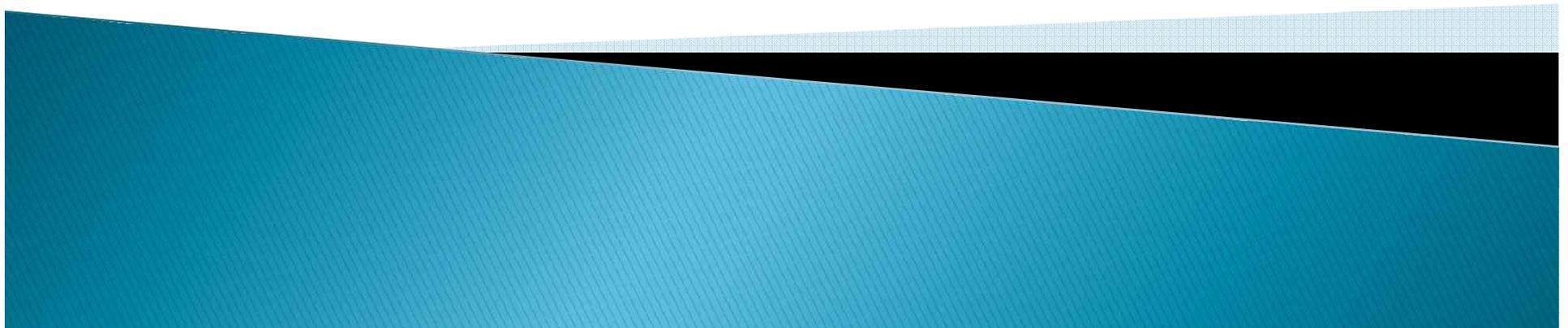
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의 의미

- ▶ 금융기관 사외이사 제도는 제도상으로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('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' 상의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사외이사 결격 사유 등)(제6조), 실제 운영은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
- ▶ 사외이사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써 도입 필요
- ▶ 이사회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음
- ▶ 경영진이 근로자추천이사를 의식할 수밖에 없으므로, '밀실 경영'이 이루어지가 어려움 → 투명성 확보 가능 → 기업 가치 제고
- ▶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 수행
- ▶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동기 부여 고취로 노동생산성 제고
- ▶ 금융기관의 중요 의사 결정(구조조정 등) 시에 근로자의 의견 반영에 따른 원활한 추진 가능

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도입 권고안

- ▶ “근로자의 경영참여로 내부 견제가 이루어져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
 - ▶ 근로자도 경영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므로 노사간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노사간 시너지를 발휘하고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음
 - ▶ 경영진이 갖지 못한 근로자의 관점이나 경험 등을 통해 생산성도 개선될 수 있음
 - ▶ 금융회사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채택하면 ‘노동존중’ 문화가 확산되면서 노사를 운명공동체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”(금융행정 혁신보고서, 88면)
- 

IV. 금융기관 기관투자자의 수 탁자 책임 원칙(Stewardship Code)의 도입과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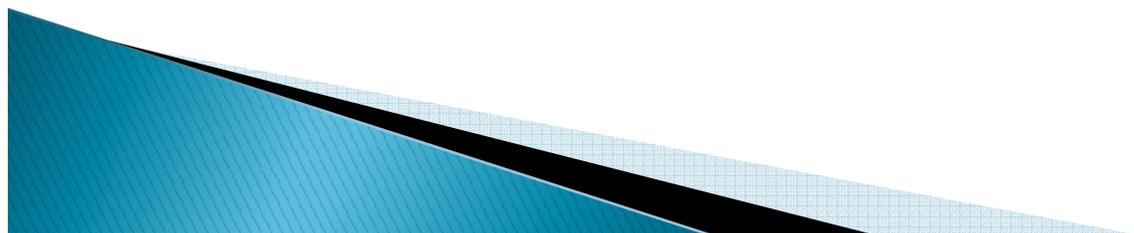


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의 의미

- ▶ 2016. 12 제정
- ▶ 금융위원회는 수탁자 책임 원칙 관련 법령 해석집(2017. 6) 공표
- ▶ 기관투자자인 금융기관은 고객이 맡긴 자산을 수탁자(trustee)로서 최선을 다해 운용할 책임이 있음
- ▶ 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’(자본시장법)도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에 대하여 “선량한 관리자의 주의”로써 집합투자재산 및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고, 투자자와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(제79조), 수탁자 책임 원칙은 “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” 및 “충실 의무”에 관한 예시로 이해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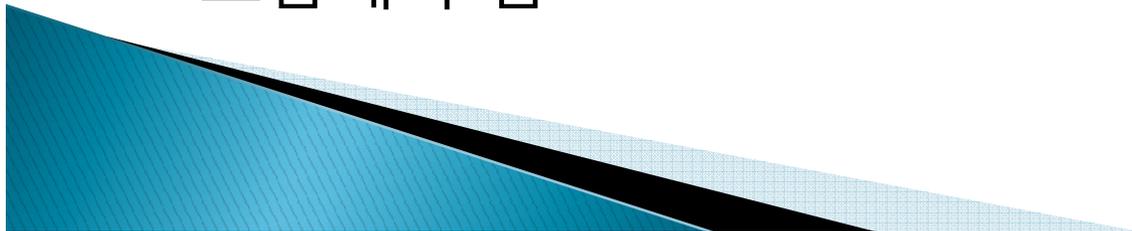
원칙 준수 여부는 자율 사항

- ▶ 원칙을 준수하면 자본시장법상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(safe harbor)
- ▶ 원칙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원칙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참여기관투자자에게만 적용되며, 모든 사항을 다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음(원칙 준수 예외 설명, Comply or Explain)
- ▶ 시장 규율의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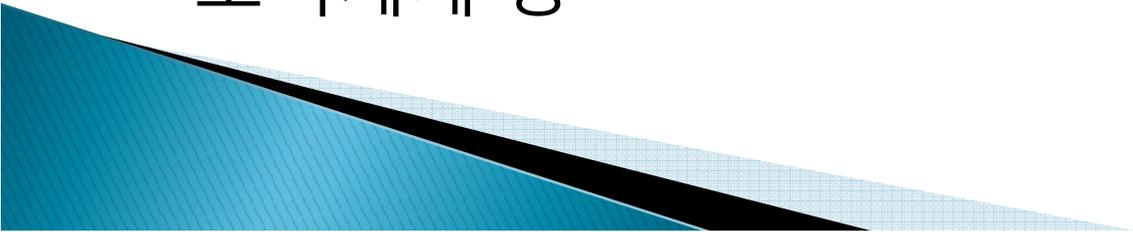


원칙 1: 수탁자 책임 정책의 제정 및 공개

- ▶ 기관투자자는 고객,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및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함
- ▶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주주 활동을 통해 회사 가치의 상승과 회사의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음
- ▶ 정책에는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한 원칙과 지침, 운용 철학, 권한과 의무, 조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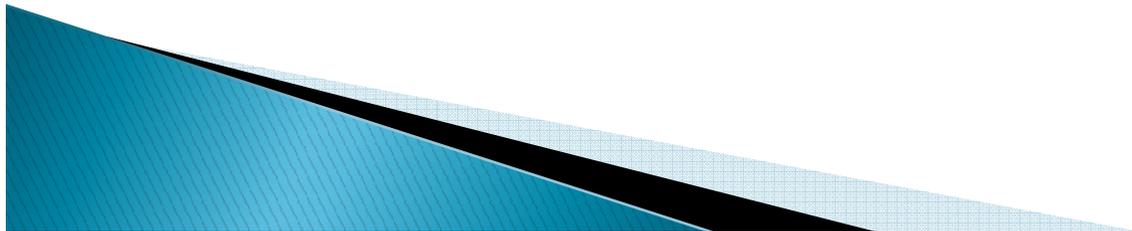


원칙 2: 이해상충 방지 정책의 제정 및 공개

- ▶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행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함
 - ▶ 이해상충 방지의 필요성과 목적
 - ▶ 이해상충 문제의 점검 및 공개
 - ▶ 이해상충 방지 방안
 - ▶ 이해상충 방지 정책의 제개정, 이행 점검에 관한 조직체계 등
-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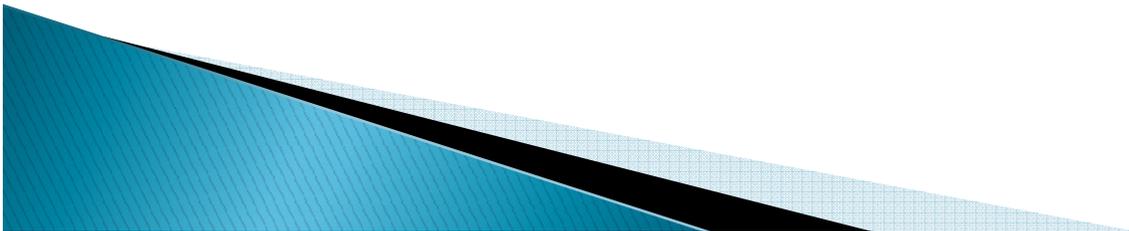
원칙 3: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

- ▶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
- ▶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 도모
- ▶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지배구조나 경영전략 등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점검 대상
- ▶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



원칙 4: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대한 내부지침 제정 운영

- ▶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,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,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함
- ▶ 재무 및 비재무 경영 사항에 대한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 필요
- ▶ 투자대상회사의 사정, 투자 정책, 내부 역량 등을 고려하여 소통에 관한 활동의 범위, 절차, 기준 등을 정한 내부지침을 마련한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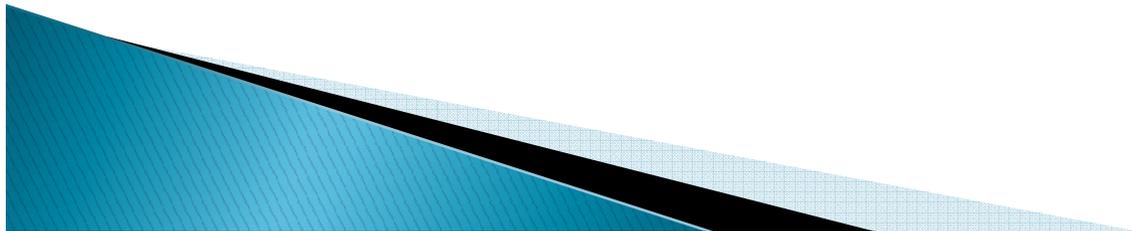


원칙 5: 의결권 정책의 제정 및 공개, 의결권 행사 내역과 그 사유의 공개

- ▶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, 절차,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,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함
 - ▶ 이해상충 방지 정책 포함
 - ▶ 의결권 행사 내역, 찬성, 반대, 기권, 중립 투표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
 - ▶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 이용 여부 등
-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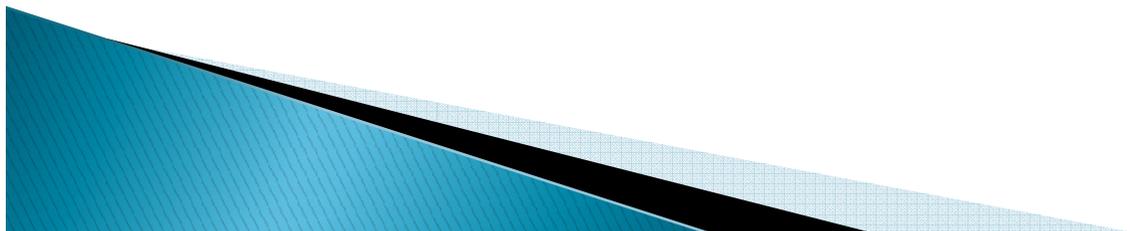
원칙 6: 의결권 행사,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주기적 보고

- ▶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함
- ▶ 기록으로 남겨 일정기간 보관 의무
- ▶ 자산운용자는 수탁자 책임 정책 및 이행 현황을 고객 또는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
- ▶ 주주활동 현황을 홈페이지나 연차보고서 형태로 보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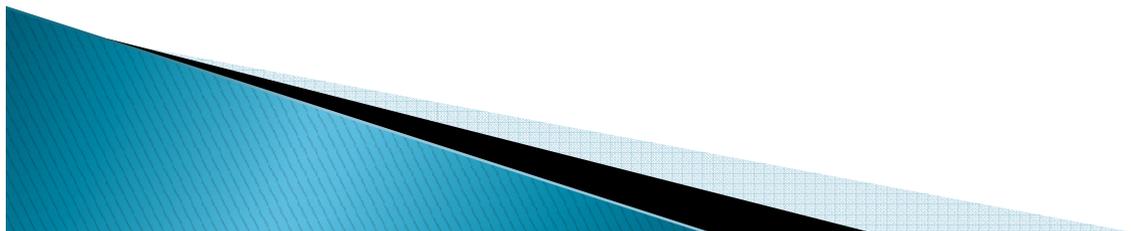
원칙 7: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

- ▶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
- ▶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
- ▶ 적절한 조직 체계 설계하고 내부 자원을 투입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
- ▶ 외부의 전문적인 자문서비스를 활용할 필요
- ▶ 논의와 토론의 활성화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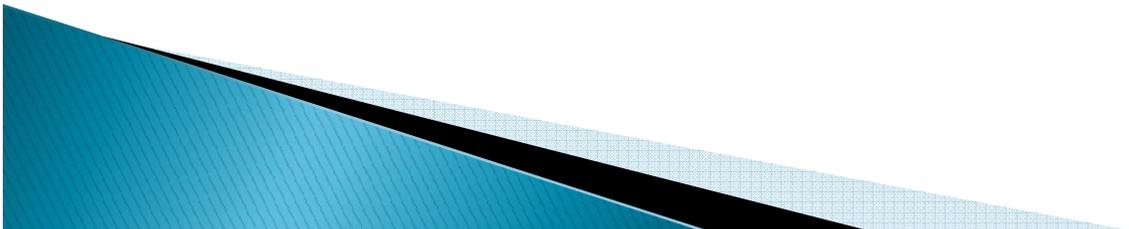
원칙 도입에 대한 기업의 우려

- ▶ 원칙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(전국경제인연합회,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)의 공동 의견(2016. 4)
- ▶ 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기업 가치를 높일 지 불확실
- ▶ 상장회사가 모든 기관투자자와 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
- ▶ 상장회사의 비공개 정보 유출과 기관투자자의 악용 가능성 존재
- ▶ 정부의 상장회사에 대한 영향력 확대 우려
- ▶ 의결권 자문시장의 부재
- ▶ 해외에서도 원칙 운영의 실효성이 불분명함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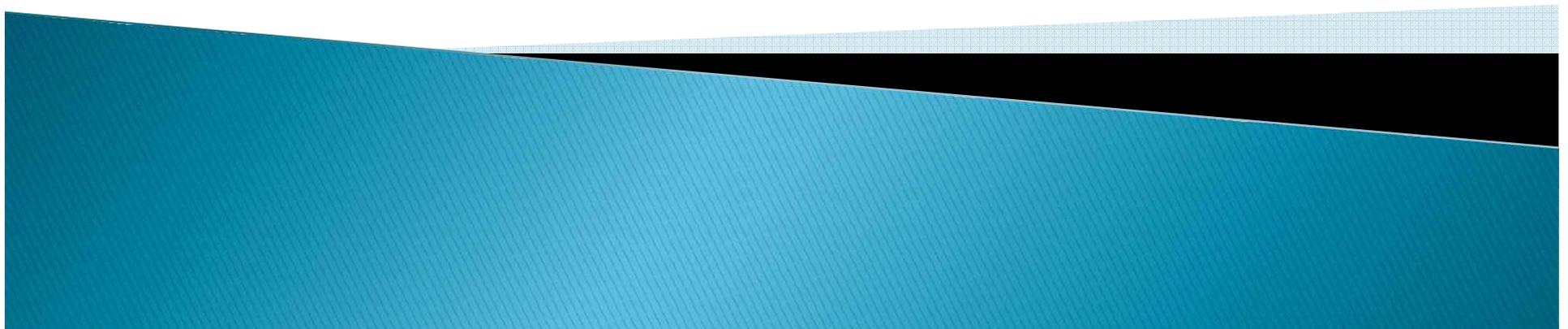


검토 과제

- ▶ 원칙 준수는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 → 안전항 장치(safe harbor) 역할 → 자본시장법에 반영 필요
- ▶ 참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상의 유인책 부여 고려
- ▶ 의결권 행사 자문기구 이용 문제 → 자문기구의 잘못된 자문 제공에 의한 손해 발생 가능성 → 내부 전문 인력 확보 및 의결권 행사 결정 과정에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내부 의사결정 합의제 기구 설치 필요
- ▶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행규정화 할 필요가 있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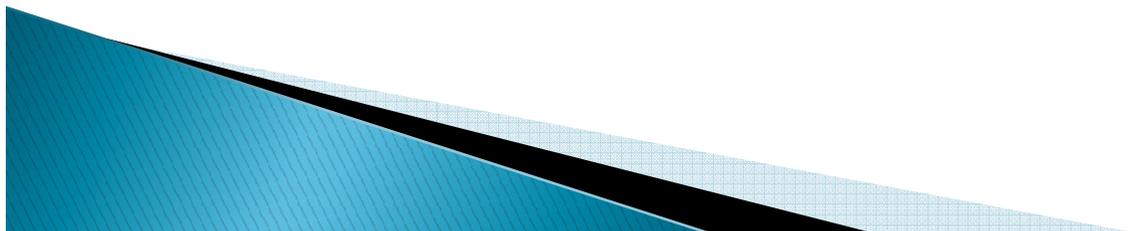


V. 기타 지배구조 개선 과제



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 확대 방안

- ▶ 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’은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 제도를 규정(제32조)
- ▶ 현재는 최다출자자 1인 개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으나, 최근 금융위원회의 개선 방안에 따르면, 최대주주 전체와 ‘주요주주’도 그 대상에 포함할 예정임(금융위원회 보도자료, 2018. 3. 15)
- ▶ * “주요주주”: 의결권 있는 주식 10% 이상 소유 주주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**중요한 경영 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**(제2조 제6호)
- ▶ 이러한 개선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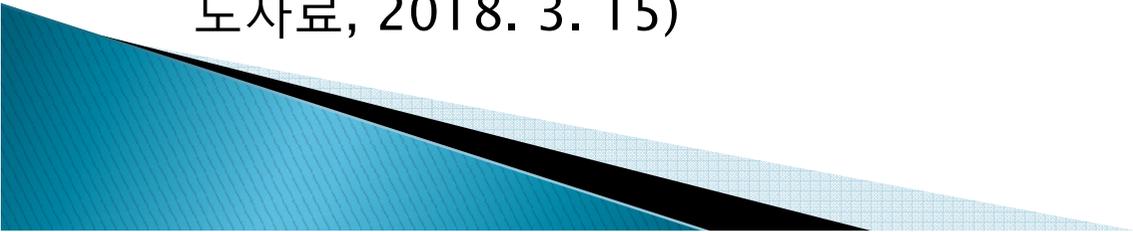


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도 ‘주요주주’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할 필요

- ▶ 다만, 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’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대상 기관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하고 있어,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의 ‘한도초과보유주주’의 적격성 심사 제도의 적용을 받음(은행법 제16조의4)
- ▶ ‘한도초과보유주주’는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%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를 말함(은행법 제16조의4)
- ▶ 따라서, 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’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주요주주로 확대하더라도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주요주주는 여전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게 됨 →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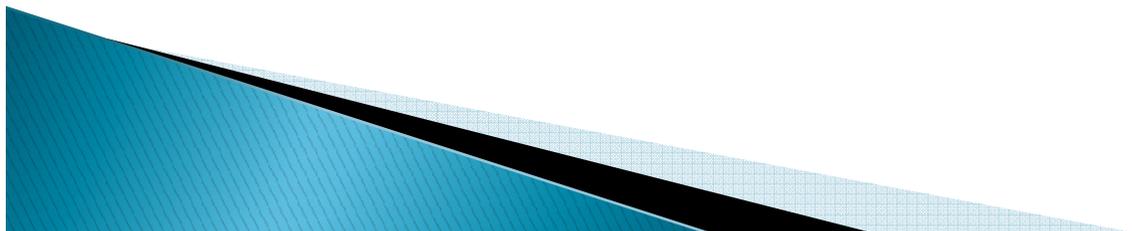


금융기관 사내이사의 경우 적극적 자격 요건 요구하지 않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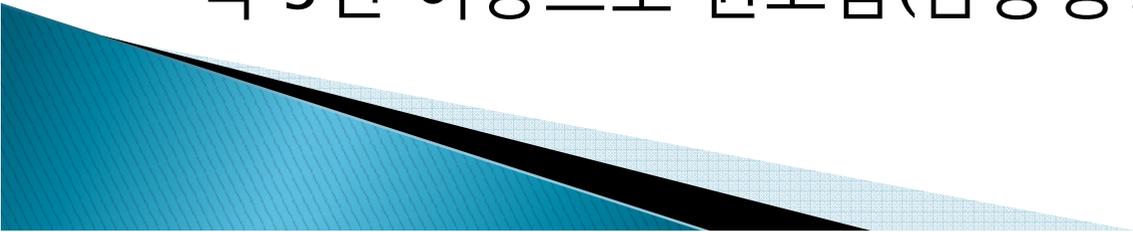
- ▶ 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’은 사외이사의 적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적극적 자격 요건 규정이 없음
 - ▶ 적극적 자격 요건: “금융, 경제, 경영, 법률,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”(제6조 제3항)
 - ▶ 따라서, 은행장 등 대표이사의 경우 금융 관련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문제가 없음 → '낙하산 인사'에 이용될 가능성 존재
 - ▶ 최근 금융위원회는 “최고경영자가 금융전문성, 공정성, 도덕성,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법률상 의무화”하겠다고 발표(보도자료, 2018. 3. 15)
- 

금융기관 대표이사 등 사내이사의 적극적 자격 요건 신설 필요

- ▶ 최고경영자뿐만 아니라 사내이사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처럼 적극적 자격 요건 적용 필요
- ▶ 은행장 등 금융기관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서라도 자격 요건 중 **해당 금융업 근무 경력 5년 이상**을 요구할 필요
- ▶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은행 출신 임원이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사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음
- ▶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경우에는 금융업 근무 경력 5년 이상 요구
- ▶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(예: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)을 신설할 것을 제안(금융행정혁신보고서, 87면)



상임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도 해당 금융업 근무 경력 3년 이상 요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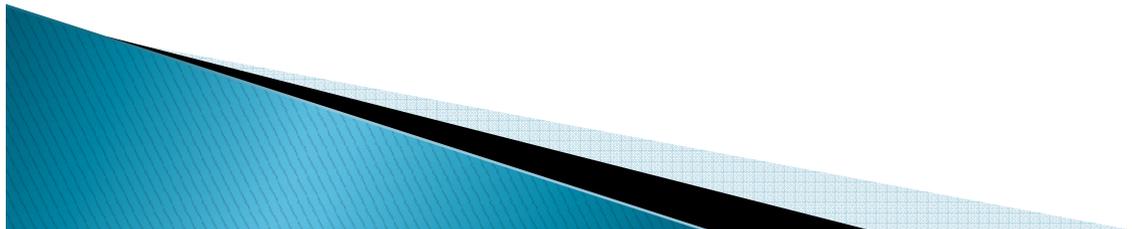
- ▶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(즉 상임감사위원) 및 상근 감사도 ‘낙하산 인사’의 대상이 되고 있음
 - ▶ 특별히 적극적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
 - ▶ 낙하산 인사를 막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임감사위원 및 상근감사에 대하여 **해당 금융업 근무 경력 3년 이상**을 규정할 필요
 - ▶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감사위원 자격을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으로 권고함(금융행정혁신보고서, 90면)
- 

사외이사의 임기 제한 필요

- ▶ 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’은 사외이사의 임기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
 - ▶ 따라서 각 금융기관별로 사외이사의 임기를 정하면 됨
 - ▶ 다만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(제383조 제2항), 사외이사의 임기도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 - ▶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**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임하는 것으로 할 필요**
 - ▶ 사실상의 단임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영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성이 있게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임
- 

상임감사위원 및 상근감사의 임기 제한 필요

- ▶ 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’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(상임감사위원)과 상근감사의 임기 제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음
- ▶ 따라서 각 금융기관별로 임기를 정하면 됨
- ▶ 이 경우 장기간 재임으로 경영진과의 유착 발생과 자기권력화 가능성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
- ▶ 이를 막기 위해서 임기 제한 필요
- ▶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2년 임기와 1년 연임제 채택 필요
- ▶ 금융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재임 기간을 6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(보도자료, 2018. 3. 15)



감사합니다

